

2002. 12.

14회 (2차 회차) ㉔
4차 불회차 (정무)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사무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	2002.11.30	11.30	12.23	12.23	기획감사 과장
충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2.14	12.17	"	"	"
충주시지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2.18	12.18	"	"	"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개별법령에 의거 새로이 충주시장 권한의 자치사무로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관계법령의 근거 조항 삭제로 폐지된 사무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43건중 신규 위임되는 사무가 공(시)유재산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등 8건이고 관계법령의 근거조항 삭제로 폐지되는 사무는 부채자 사실확인등 5건으로 3건이 늘어 위임사무가 46건이 되었으며

-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사무의 명칭과 관계조항이 변경되는 사무중 “과세증명원 발급”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43조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로 바뀌는 등 15건의 사무가 변경됨.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에 대한 연장 승인지침이 시달되어 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부칙)
- 자치센터기획팀 : 2002. 12. 31 ⇒ 2004. 6. 30.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군구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에 따라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부칙)
-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 2002. 12. 31 ⇒ 2004. 6. 3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사무위임조례는 1996. 11. 30일 조례 제291호로 전문개정되었으나 주민의 민원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사무에 대한 관계 규정이 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각 읍면동의 직원수는 줄었으나 대민서비스 업무는 증가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위임업무가 현재 43건에서 46건으로 늘어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문제점은 없을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1998. 9. 30. 조례 제372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를 담당할 “자치센터기획팀”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6조, 제10조에 의거 2001. 9. 28. 조례 제545호로 설치되어 2002. 12. 31까지 읍면동의 기능전환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업무의 이관 및 존치사무의 실태조사 시와 읍면동간 사무 및 인력재조정,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등 지도 점검등을 담당하도록 설치되었으나

- 현재까지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물론 주민자치운영위원회 구성 미완료등 자치센터기획팀의 기능이 종료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한시기구의 설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존속기한 3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장” 하도록 한 규정과 도지사의 한시기구 연장승인 통보(2002. 12. 10)에 따라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부칙(2001. 9. 28 조례 제545호) 제2항에 명시한 “2002. 12. 31”을 “2004. 6. 30”로 개정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이 조기에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1998. 9. 30. 조례 제373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 시군구의 지방정보화 업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여 정보화사업 기반 조성과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능보강을 위하여 2000. 9. 28 도로부터 시군구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이 시달되어 2000. 11. 23 조례 제489호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 제2항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2. 12. 31까지 한시정원을 두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기능을 보강하고
-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명시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2002. 12. 17 도로부터 한시정원에 대한 기간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 : 기능전환으로 읍면동 인력이 감축될 계획인 상태에서 사무위임이 늘어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답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만 정비하는 것이며 기능전환이 확정되면 재 정비되어야 할 사항임.

▶질의 : 공유재산 대부료 허가도 읍면에 위임되는 사항인가?

○답변 : 허가는 시에서 하고 부과징수만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임.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 : 주민자치센터 설치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닌가?

○답변 : 한시기구 연장은 전국적인 사항임.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 : 정원이 연장되는 전산직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가?

○답변 : 예

5. 심사결과

가.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가.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